

# 단계적 일상회복(1차 개편) 방역수칙 행정명령 고시

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을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10. 31.

## 전라남도지사

### 1. 적용기간

○ 2021년 11월 1일(월) 0시 ~ 별도 공지일까지

\* 단, 전라남도 고시 제2021-488호에 따라 식당·카페,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는 2021.11.1.(월)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

\* (계도기간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.11.1. 0시부터 2주간,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

### 2. 적용대상

○ 전라남도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### 3. (집합·모임·행사 등)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#### ① 사적 모임 제한(12명까지 가능)

○ (조치내용)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1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 활동 금지

- (제한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- (인원산정) '12명의 범위'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은 제외  
<사적 모임 적용 예외>

○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\* 등이 모이는 경우

- 동거가족 모임
- \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-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입증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**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**

-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·행사는 아래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
  - (1명~99명)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·행사가 가능
  - (100명~499명) 모임·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\*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·행사 가능
    - ☞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·행사의 경우,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'전원'(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)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,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\* 외 참여 금지 조치 必
- \* ^접종완료자 및 완치자, ^PCR 음성확인자, ^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→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- (결혼식(장) 등) 결혼식장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는 위 인원제한(1~499명)을 동일 적용하되,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(혼합적용 불가)

※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(수도권: 10명/수도권 외 12명)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촉 완료자 등으로만 가능,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

< 적용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/ 결혼식장 등 종전 수칙 >

- ▲(모임·행사예시) 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각종 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- ▲(결혼식장 등 밀집도 제한 수칙)
  - (결혼식장<sup>취식O</sup>) 최대 250명 가능(미접종자 49명+ 접종완료자 201명)
  - (전시회·박람회) 6㎡당 1명,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
  - (국제회의·학술행사) 좌석 두 칸 띄어 앉기(밀집도 제한 내 참석자 접종여부 무관)

- (집회·시위) 인원제한은 집합·모임·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

\*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 신고 시 참가(예정) 인원(수)은 접종완료자 등의 인원 수로 함

- (500명 이상)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500명 이상의 모임·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,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(지역)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·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

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○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,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·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\* 및 기업의 경영활동\*에 필수적인 모임·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

\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·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·송출 등

④ 시험의 경우, 수험생 간 1.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

#### 4. 고위험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

○ (검사대상) 고위험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

※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은 신규채용 또는 근로현장을 달리 할 경우 근무 전 진단검사 음성결과 확인

① 외국인 고용사업장(내·외국인 모두 포함)

② 입·출항 외국인(선원) 승선 연근해어업 허가어선(내·외국인 모두 포함)

\* 입항 당일 검사 원칙(선별진료소 검사시간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)

\*\*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(단,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14일 이내 출항 시 제외)

③ 직업소개소 운영자·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·외국인 근로자

○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2주 1회 진단검사 시행

#### 5. 법적 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 및 제80조제7호, 같은 조 제2의2호, 제2의4호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**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**제80조(벌칙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**제83조(과태료)**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(운영중단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 
제3항

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**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○ (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)

- ① 고발<300만원 이하의 벌금>, ② 과태료 부과<300만원 이하> ③ 운영중단 명령 <3개월 이내> ④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\*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하는 조치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(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)

-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, 끝.

# 행정명령서

1.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을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가. 처분대상 시설·업종 : [붙임]

나. 적용지역 : 전라남도 전 지역

다. 처분기간 : '21. 11. 1.(월) 0시 ~ 별도 공지일까지

\* 단, 전라남도 고시 제2021-488호에 따라 식당·카페,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는 2021.11.1.(월)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

라. 처분내용 :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을 기본으로 하되, 방역수칙[붙임] 적용

- 사적 모임(가족모임 포함)은 접종 구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
-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허용(붙임)
-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·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
-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

※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은 신규채용 또는 근로현장을 달리 할 경우 근무 전 진단검사 음성결과 확인

① 외국인 고용사업장(내·외국인 모두 포함)

② 입·출항 외국인(선원) 승선 연근해어업 허가어선(내·외국인 모두 포함)

\* 입항 당일 검사 원칙(선별진료소 검사시간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)

\*\*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(단,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14일 이내 출항 시 제외)

③ 직업소개소 운영자·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·외국인 근로자

마. 처분사유 :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주요 방역수칙 변경 등

바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
사. 벌칙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2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, 제83조제2항, 제83조제4항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3.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021년 10월 31일

전라남도지사



**용어 정리**

- (사적모임) 동창회, 동호회, 직장 내 회식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, 가족·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
- (접종완료자 등) 접종 완료자, PCR검사 음성자(48시간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

**□ 사적모임 수도권 10명,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**

-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을 12명까지 허용하되, 식당·카페의 경우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 최대 4명을 유지

**예시) 식당·카페 이용 예시**

**비수도권 사적모임**
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 + 완료자 8명 ⇒ 12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 + 완료자 9명 ⇒ 12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 + 완료자 10명 ⇒ 12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 + 완료자 11명 ⇒ 12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 + 완료자 12명 ⇒ 12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 + 완료자 0명 ⇒ 5명(X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 + 완료자 7명 ⇒ 12명(X)

**□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도입**

-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으로 한시적 도입
- (적용대상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등 총 31종

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(5종)**

- ▲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
- 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실내체육시설 ▲ 목욕장업 ▲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인)

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(24종)**

- ▲ 식당·카페 ▲ 학원 등 ▲ 영화관·공연장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
- ▲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 ▲ 오락실·멀티방 ▲ 상점·마트·백화점(각 300㎡ 이상)
- ▲ PC방 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 ▲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▲ 실외체육시설 ▲ 숙박시설
- ▲ 파티룸 ▲ 도서관 ▲ 키즈카페 ▲ 돌잔치 ▲ 전시회·박람회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
- ▲ 이·미용업 ▲ 국제회의·학술행사 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▲ 종교시설

**고위험 사업장(2종)**

- ▲ 콜센터 ▲ 물류센터

<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>

구 분	접종완료자 (완치자 포함)	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		
		PCR음성	의학적사유	18세 이하
유흥시설	○	×	×	×
경마·경륜·경정/카지노	○	○	×	×
실내체육시설	○	○	○	○
노래연습장	○	○	○	○
목욕장	○	○	○	○
입원자·입소자 면회	○	○	×	×
노인·장애인 시설이용	○	○	×	×

□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

공통 기본 방역수칙		
· 방역수칙 게시·안내	· 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·안심콜 등)	· 실내 마스크 착용
·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·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	· 일 1회 이상 소독

구분	도내 지역 (1단계 개편한+방역수칙 조정)
<b>모임·행사</b>	
사적 모임	<p>▶ 사적 모임(가족모임 포함)은 접종 구분없이 12명</p> <p>- <b>식당·카페의 경우만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</b></p> <p>* 예외</p> <p>① 동거가족,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돌봄인력, 임종을 지키는 경우</p> <p>②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</p>
행사·집회	<p>▶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</p> <p>▶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</p> <p>*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띄우기, 정원 제한, 취식금지 등 방역조치 해제</p> <p>* (행사) 단체·법인·공공기관·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기념행사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과 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</p>



구분	도내 지역 (1단계 개편한+방역수칙 조정)
<b>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</b>	
<p>유흥시설 5종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 콜라텍·무도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u>24시~익일 05시까지 운영·이용 제한</u></li> <li>▶ <u>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</u></li> <li>▶ <u>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 적용</u></li> </ul>
<p>노래(코인)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·경정·경마장 카지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운영시간 제한 없음</li> <li>▶ <u>접종완료자 등 이용 가능</u>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<u>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 적용</u>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blue;">* (실내체육시설) 샤워실 이용 가능, 음악속도·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(그 외 시설은 1주)</p>
<b>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</b>	
<p>식당·카페 (홀덤펍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u>운영시간 제한 없음</u></li> <li>▶ 미접종자만 이용 시 4명까지 가능</li> <li>▶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</li> <li>▶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</li> <li>▶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</li> </ul>
<p>영화관·공연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운영시간 제한 없음</li> <li>▶ 일행 간 한 칸 띄우기(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한 칸 띄우기 해제)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<u>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</u></li> </ul>
<p>스포츠경기(관람)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용인원의 50%(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)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<u>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</u></li> <li>▶ 응원단장은 최소한의 경기안내 가능, 그 외 육성 응원 금지</li> </ul>

구분	도내 지역 (1단계 개편한+방역수칙 조정)
학원 등(좌석 없는 경우) 오락실·멀티방 (홀덤게임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운영시간 제한 없음</li> <li>▶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㎡당 1명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/ul>
학원 등(좌석 있는 경우) 독서실·스터디 카페 PC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운영시간 제한 없음</li> <li>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)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)</li> <li>* (학원)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</li> <li>*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(학원·독서실 제외)</li> </ul>
놀이공원 워터파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용인원의 50%</li> </ul>
실외체육시설 상점·마트·백화점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도서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* (실외체육시설)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풋살15명) 초과금지</li> </ul>
전시회·박람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가능</li> <li>▶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</li> <li>* 종전 수칙(6㎡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)도 택일 적용 가능</li> <li>▶ 음식물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* 음식물 전시 목적의 행사의 경우 별도 공간 지정하여 취식 가능</li> </ul>
국제회의·학술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좌석 한 칸 띄우기</li> <li>▶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가능</li> <li>▶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</li> <li>* (국제회의) 종전 수칙(좌석 간 2칸 띄우기)도 택일 적용 가능</li> </ul>
결혼식 돌잔치 장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㎡당 1명,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</li> <li>*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거리두기 해제되나 최소 1m 거리두기 권고 유지</li> <li>▶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가능</li> <li>▶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</li> <li>* (결혼식) 종전 수칙(49명+접종 완료자 201명)도 택일 적용 가능</li> <li>▶ 음식물 섭취 가능</li> </ul>

구분		도내 지역 (1단계 개편한+방역수칙 조정)
숙박시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 예약 및 이용</li> <li>▶(공용공간) 주기적 환기 실시</li> </ul>
종교시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수용인원의 50%</li> <li>▶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</li> <li>▶음식물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통성기도 등 금지, 정규종교활동(예배 등)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</li> <li>▶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소모임·성가대 가능</li> </ul>
<b>고위험 사업장</b>		
콜센터 물류센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</li> </ul>

**참고**

**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**

시군	총계	보건소 운영시간			의료기관 운영시간			
		평일	토요일	공휴일	기관명	평일	토요일	공휴일
<b>합계</b>	<b>57</b>	<b>22</b>			<b>35</b>			
목포	7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목포한국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목포기독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목포중앙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목포시의료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세안종합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전남중앙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여수	5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여천전남병원	09시~17시	09시~13시	미운영
					여수전남병원	09시~17시	09시~12시	미운영
					여수한국병원	09시~17시	09시~12시	미운영
					여수제일병원	09시~18시	09시~13시	미운영
순천	4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성가롤로병원	08시~11시	08시~11시	08시~11시
					순천의료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순천병원	09시~17시	00시~24시	00시~24시
나주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나주종합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광양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광양사랑병원	09시~11시	09시~11시	미운영
담양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담양사랑병원	08시~20시	08시~20시	08시~20시
곡성	2	09시~20시	09시~20시	09시~20시	곡성사랑병원	00시~24시	미운영	미운영
구례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구례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고흥	3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고흥종합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녹동현대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보성아산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보성	3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별교삼호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화순	3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화순전남대학교병원	09시~16시	09시~13시	09시~13시
					화순성심병원	09시~18시	미운영	미운영
장흥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장흥종합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강진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강진의료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해남	3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해남종합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해남우리종합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영암	1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-			
무안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무안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함평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함평성심병원	18시~09시	00시~24시	18시~24시
영광	3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영광종합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					영광기독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장성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장성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완도	2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완도대성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진도	2	09시~20시	09시~20시	09시~20시	진도한국병원	00시~24시	00시~24시	00시~24시
신안	1	09시~18시	09시~18시	09시~18시	-			